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2월 20일, 임미애의원 등 16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2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2.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3.20.)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7.29.)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6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7.29.) 상정, 소위심사보
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임미애 의원)

우리나라는 1994년에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여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자문기구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에서 저율 관세로 수입 가능한 물량 증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있음.

그런데 농산물 수급조절이나 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는 경우 저렴한 수입 농산물 국내 반입으로 인하여 국내 농산물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직접 이해관계자인 농산물 생산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절차가 부재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하위 법령에 규정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법률로 상향 규정 하되, 그 성격을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하고 농산물 생산자 단체의 대표를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 농산물 수입 과정에 농산물 생산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적정하고 합리적인 농산물 수급조절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가.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법률 상향 규정

시행규칙은 개정 절차가 법률 또는 시행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간소함.

수급조절위원회는 시행규칙에만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설치 근거의 안정성에 따른 위원회 존속의 안정성은 법률 또는 시행령에 설치 근거를 둔 경우에 비하여 낮음.

따라서 수급조절위원회가 법률에 근거를 두게 될 경우 위원회 존속의 안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수급조절위원회가 법률에 따른 위원회가 되면서 「행정기관위원회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도 있음.

현재 수급조절위원회는 법률 또는 시행령에 따른 위원회가 아니므로, 위원회 설치 시 「행정기관위원회법」 제6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요하지 않았음. 이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의 관리·점검을 받지 않았음.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조절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가 되어 「행정기관위원회법」 제6조에 따른 협의 대상 위원회가 되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설치에 있어 협의를 요하게 됨.

또한, 설치 이후에는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타 위원회와의 중복성 여부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관리·점검을 받게 됨.

이에 따라 수급조절위원회의 법률 상향 규정 여부는 ① 설치 근거의 안정성 측면이 강화되어 위원회 존속의 안정성을 강화하지만, ② 행정안전부의 관리·점검대상이 된다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나.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조정위원회 전환

현재 수급조절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대한 자문기능만을 수행하는 위원회임.

그런데 개정안은 수급조절위원회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동시에 법률에 따른 심의기능을 부여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른 수급조절위원회는 그 분류가 심의·조정위원회에 해당하게 됨.

개정안에 따라 수급조절위원회가 수급안정을 위한 예시가격 결정, 유통조절명령 등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위원회 심의를 필요적으로 거쳐야 함.

이 경우 정책 결정 단계의 증가에 따라 정책의 신속성 측면이 약화될 수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수급조절위원회가 현재보다 빈번하게 개최될 필요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연간 회

의 개최횟수가 4회에서 24회로 증가하고 속기록 작성비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5년간 총 10억 2,000만원으로 추계하였음.

개정안에 따라 수급조절위원회가 수급안정을 위한 예시가격 결정, 유통조절명령 등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위원회 심의를 필요적으로 거쳐야 함.

이 경우 정책 결정 단계의 증가에 따라 정책의 신속성 측면이 약화될 수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수급조절위원회가 현재보다 빈번하게 개최될 필요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연간 회의 개최횟수가 4회에서 24회로 증가하고 속기록 작성비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5년간 총 10억 2,000만원으로 추계하였음.

다.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구성

현행법 시행규칙은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이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훈령인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

영규정」에서 규정함.

개정안은 수급조절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대체로 현재 시행규칙 및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구성(공동위원장 2명, 20명 이내 위원, 위원 자격 등)을 반영하고 있음.

또한, 개정안은 현재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을 생산자 단체 대표로 구성’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법률에서 위원 구성에 관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음.

개정안은 수급조절위원회 내에서 생산자단체 대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생산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개정안과 같이 특정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을 일정 비율 이상 두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위원회로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위원 정수의 30% 이상을 여성 농업인으로 구성)가 있음.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는 정책당사자인 여성농업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이를 고려하면, 개정안은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생산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논의를 거쳐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임.

라.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사항

현행법 제15조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이하 “「마라케쉬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시장접근물량(Tariff Rate Quota; TRQ)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하는 농산물에 대한 추천, 비추용 농산물 수입 등의 제도를 규정함.

한편, 「관세법」 제71조는 원활한 수급, 산업의 경쟁력 강화, 특정 물품의 수입 억제 등을 위하여, 기본세율의 $\pm 40\%p$ 범위 내에서 관세를 조정·운영할 수 있는 할당관세 제도를 규정함.

이들 두 가지 제도는 낮은 세율의 관세를 통하여 국내 시장에 유입된 수입농산물이 일종의 공급충격으로 작용함에 따라, 농산물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짐.

그런데 현재 이들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제도에 따른 공급충격의 영향을 받는 생산자(농가)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음.

가령, TRQ의 증량과 할당관세의 추진 절차를 살펴보면, 대부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기획재정부의 행정 내부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

해당 과정에서 외부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경로로 농축산물무역정 책

심의회(이하 “무역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가 존재함.

다만, 무역정책심의회 위원 구성이 대부분 생산자가 아닌 당연직 위원과 농협 대표이사·학계·소비자단체 등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생산자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지난 2024년 국정감사에서는 TRQ와 할당관세 제도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존재했음. 특히, 일부 위원은 TRQ와 할당관세 제도에 생산자(농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경로로서 수급조절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하였음.

이에 개정안은 수급조절위원회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TRQ와 할당관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하여 이들 정책에 생산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이므로,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어 보임.

다만, 개정안에 따른 경우 현재 해당 사항에 대한 별도의 심의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무역정책심의회와의 역할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원택)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

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